


(성남시 체육시설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 검토보고서-참조17)

 성남시의회 Seongnam City Council	성남시의회
	제284회(임시회)

2023.07.17.(월)  
문화복지체육위원회실

# 조례(안) 등 검토보고서

## 《검토사항》

- 조례안 8건  
(제정 2건, 일부개정 6건)
- 민간위탁 동의안 7건

문화복지체육위원회

(전문위원 염대석)

# 성남시 체육시설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

## 1. 제안경위

- 제출자: 성남시장
- 의안번호: 제5191호

## 2. 제안이유

- 2021년 9월에 준공되어 성남도시개발공사에서 시설관리하고 있는 성남FC 축구센터(클럽하우스)를 실제 시설을 사용하고 있는 성남FC에 위탁하여 시설관리 및 운영의 효율성을 제고하고 성남FC에서 다양한 사업을 전개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자 「성남시 사무의 민간위탁촉진 및 관리조례」에 의하여 성남시의회 동의를 받고자 함

## 3. 주요내용

- 위탁대상 시설현황

시설명	소재지	설치일	시설규모	주요시설
성남FC 축구센터 (클럽하우스)	분당구 분당수서로 489 (정자동 4-12)	2021. 9. 30.	· 지하1층/지상3층 (연면적 7,304㎡), · 축구장(14,280㎡)	· 실내: 라커룸, 숙소(26실), 물리치료실, 체력단련실, 회의실, 식당, 샤워실 등 · 실외: 천연잔디구장 (68m×105m) 2면

- 위탁개요

- 위탁기간: 위·수탁 협약 체결일로부터 5년
- 위탁내용: 성남FC축구센터(클럽하우스) 시설관리 및 운영 전반
  - 종사자: 10명(기간제근로자 6명 포함)
  - 성남FC축구센터(클럽하우스) 운영 업무
  - 성남FC축구센터(클럽하우스) 시설물 유지관리 업무
  -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판단하여 요구하는 사무

- 선정방법: 수의계약
- 예산지원(예정)액: 383,949천원

계	인건비	운영비	비고
383,949천원	114,541천원	269,408천원	

※ 연도별 예산편성 계획에 따라 변경 가능

## 4. 참고자료

- 민간위탁 추진 근거
  - 「성남시 체육시설 관리 운영조례」 제24조
  - 「성남시 사무의 민간위탁촉진 및 관리조례」 제4조, 제5조, 제6조

## 5. 검토 의견

### 가. 동의안의 개요

- 본 동의안은 「성남시 사무의 민간위탁촉진 및 관리조례」 제4조제4항1)에 따라 「성남FC 축구센터(클럽하우스)」의 시설관리 및 운영 전반에 대한 위탁을 추진하기 위해 성남시의회 의 동의를 얻고자 하는 것임.

### 나. 민간위탁 대상여부 검토

- 성남FC 선수들의 숙식과 훈련, 물리치료까지 원스톱 지원 시스템을 갖춘 「성남FC 축구센터(클럽하우스)」의 위탁 동의안은 「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」 제12조제2항2)과 「스포츠산업 진흥법」 제17조제6항3)에

- 
- 1) 「성남시 사무의 민간위탁촉진 및 관리조례」 제4조 ④ 시장은 제3항에 따른 민간위탁사무의 위탁기간 만료 후 다시 위탁하고자 할 때에는 그 만료일 90일 전까지 시의회의 동의를 다시 받아야 한다.
  - 2) 「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」 제12조 ② 행정기관은 민간수탁기관을 선정하려는 경우에는 다른 법령에서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공개모집을 하여야 한다. 다만, 민간위탁의 목적·성질·규모 등을 고려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관계 법령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민간수탁기관의 자격을 제한할 수 있다.
  - 3) 「스포츠산업 진흥법」 제17조 ⑥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공유재산 중 체육시설을 프로스포츠단의 연고 경기장으로 사용·수익을 허가하거나 관리위탁 또는 대부하는 경우 「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」 제20조, 제27조 및 제29조에도 불구하고 해당 체육시설과 그에 딸린 부대시설에 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프로스포츠단(민간자본을 유치하여 건설하고 투자자가 해당 시설을 프로스포츠단의 연고 경기장으로 제공하는 경우 민간 투자자를 포함한다)과 우선하여 수의계약할 수 있다. 건설 중인 경우에도 또한 같다. <개정 2021. 4. 13., 2022. 1. 18.>

근거를 두며, 본 동의안이 위탁 기간을 5년으로 계획한 부분은 「성남시 체육 시설 관리 운영조례」 제24조제4항에 따른 것으로 특별한 문제는 없는 것으로 판단됨.

- 「성남시 체육시설 관리 운영조례」 제24조에 체육시설의 위탁관리를 규정하고 있으며, 「성남시 사무의 민간위탁촉진 및 관리조례」 제4조의2에 ‘시장의 소관 사무 중 교육·문화·체육·관광·예술·영상 등 관련시설 운영에 관한 사무 및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무는 민간위탁 할 수 있다.’ 고 규정하고 있음.

〈참고자료: 위탁관리 비교〉

구 분		성남도시개발공사(현재)	성남FC(변경)	비고
인 원		18명(정규11, 공무4, 기간제3) (정규) 팀장(기계)1, 행정2, 전기2, 기계2, 건축1, 조경1, 통신1, 소방1 (공무) 환경미화4 (기간제) 방호3	10명(정규4, 기간제6) (정규) 팀장(기계)1, 전기·통신, 기계·소방1, 조경1 (기간제) 환경미화3, 방호3	
위탁 비용 (연간)	인건비	993백만원	458백만원	△535백만원
	운영비	1,154백만원	1,077백만원	△ 77백만원
	계	2,147백만원	1,535백만원	△612백만원

☞ 정규 인원 중 필수 기술인력 외 필요부분은 개별 관리용역 발주 및 기간제 채용 (청소, 주차관리)하고 행정업무는 기존 성남FC 인력 활용

다. 종합검토 의견

- 본 동의안은 「성남시 사무의 민간위탁촉진 및 관리조례」에 따라 체육시설인 성남FC 축구센터(클럽하우스)에 대한 시설관리 및 운영 전반을 위탁하고자 사전에 시의회의 동의를 얻고자 하는 것으로 절차와 내용상 큰 문제는 없는 것으로 판단됨.

# 관계 법령 발췌서

## □ 성남시 체육시설 관리 운영조례

제24조(위탁관리) ① 시장은 체육시설의 효율적인 관리 및 활용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지역 사회 체육의 활성화에 이바지할 수 있는 체육단체, 성남도시개발공사에 체육시설의 운영을 위탁할 수 있다. <개정 2014.03.24, 2019.02.18.>

② 제1항에 따라 체육단체에게 위탁하고자 할 때에는 「성남시 사무의 민간위탁촉진 및 관리조례」를 준용한다.<일부개정 2019.02.18.> <개정 2011.03.21, 2013.12.09>

③ 제1항에 따라 위탁관리·운영하고자 할 경우에는 관리책임, 위탁기간, 그 밖에 관리운영에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계약을 체결해야 한다. <개정 2013.12.09, 2019.02.18., 2021.8.2.>

④ 제2항의 위탁기간은 5년 이내로 한다. 다만,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.<일부개정 2015.10.12, 2019.02.18., 2021.2.19.>

⑤ 수탁사무의 처리에 관한 책임은 수탁기관에 있으며 권한을 행사함에 있어서는 수탁기관의 명의로 한다.

⑥ 시장은 시설관리 및 운영상 필요한 경우 위탁관리에 소요되는 경비의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. <개정 2013.12.09., 2015.10.12>

## □ 성남시 사무의 민간위탁촉진 및 관리조례

제4조(민간위탁 대상사무의 기준 등) ① 법령 또는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장의 소관사무 중 조사·검사·검정·관리 업무 등 시민의 권리·의무와 직접 관계되지 아니하는 다음 각 호 사무를 민간위탁 할 수 있다.<일부개정 2020.2.24.>

1. 단순 사실행위인 행정작용
2. 공익성보다 능률성이 현저히 요청되는 사무
3. 특수한 전문지식 및 기술이 필요한 사무<일부개정 2020.2.24.>
4. 그 밖에 시설관리 등 단순행정 관리사무<일부개정 2020.2.24.>

② 시장은 제1항 각 호의 사무를 민간위탁하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민간위탁의 적정성을 미리 검토해야 한다.<본항개정 2020.2.24.>

1. 다른 사무방식으로서의 수행 가능성
2. 서비스 공급의 공공성 및 안정성
3. 경제의 효율성
4. 민간의 전문지식 및 기술 활용 가능성
5. 관리 및 운영의 투명성
6. 그 밖에 민간의 서비스공급 시장여건 등 민간위탁 적정성 검토를 위해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

③ 시장은 사무를 민간위탁 하고자 할 경우 국가위임사무는 관계 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하고 자치 사무는 성남시의회(이하 "의회"라 한다)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. 다만, 제4조의2제6호에 해당하는 사무 중 위탁기간이 1년 미만인 단순 행정관리 사무는 그러하지 아니하다.

<단서신설 2016.2.17.><일부개정 2020.2.24.>

④ 시장은 자치사무 중 제3항에 따른 민간위탁의 위탁기간 만료 후 재계약 및 재위탁 할 때에는 그 만료일 90일전까지 의회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.

<본항신설 2016.2.17.><일부개정 2020.2.24.>

⑤ 시장은 제3항 및 제4항에 따른 민간위탁 동의 요구안을 의회에 제출할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.<본항개정 2020.2.24.>

1. 위탁사무명
2. 민간위탁 추진근거 및 추진 필요성
3. 위탁사무 내용
4. 위탁시설 개요(소재지, 규모, 지원시설, 위치도)
5. 민간위탁 기간
6. 수탁자 선정방식
7. 소요예산 및 산출근거
8. 민간위탁의 적정성 검토결과
9. 기타 민간위탁 심의에 필요한 사항

⑥ 시장은 수탁기관이 위탁받은 사무를 수행하는데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「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」에 따라 공유재산 및 물품을 사용하게 하거나,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.<본항신설 2020.2.24.>

**제4조의2(민간위탁 사무)** 제4조에 따라 민간에 위탁하는 사무는 다음과 같다.<본조신설 2016.2.17.>

1. 노인·장애인·여성·청소년·아동복지 등 관련시설 운영에 관한 사무 (제2호~제6호 생략)

**제5조(수탁기관의 선정기준)** 수탁기관을 선정할 때는 재정부담능력, 시설과 장비, 기술보유 정도, 책임능력과 공신력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수탁기관으로 선정하여야 한다.

**제6조(수탁기관 선정방법)** <본조제목개정 2020.2.24.> ①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수탁기관을 선정하고자 할 때는 공개모집을 원칙으로 하며, 시장은 수탁기관 선정을 위한 공고 시에 선정기준 및 배점 등을 공개하여야 한다.<일부개정 2020.2.24.>

② 수탁기관을 모집할 경우에는 신청서와 함께 사업계획서를 제출하게 하고, 해당분야의 전문가로 구성된 심사위원회에서 제5조에 따른 적격자를 선정하도록 한다.<일부개정 2020.2.24.>

③ 시장은 제2항에 따라 수탁기관을 선정한 경우에는 수탁기관 선정사실을 공고하여야 한다.

<본항신설 2020.2.24.>